

# 일제의 강제동원과 원폭피해자 기록의 출처 연구

김 경 남\*

- I. 머리말
- II. 피폭 후 한인 강제동원·원폭피해자 조사 배경과 추이
- III. 1960년대 이후 원폭피해자 조사의 특징
- IV. 한인 원폭피해자의 기록물 맥락과 출처 분석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945년 8월 피폭 이후, 일본과 한국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한 한인 원폭피해자를 조사한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강제동원 조사 명부와 원폭피해자 기록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기록물의 맥락과 출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일본 후생성과 시민단체가 작성한 명부와 한국 정부와 연구소가 작성한 명부, 합천원폭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하 강제동원 명부의 출처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동원된 인원을 추출하였고, 향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knkim@knu.ac.kr

또한 원폭문제의 하나로서, 피폭 2세, 3세를 피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그들의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피폭 8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한인 원폭 피해자의 전체 명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전면 조사는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

강제동원, 한인(韓人), 원폭피해자, 히로시마, 나가사키

## I. 머리말

1945년 8월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탄(이하 원폭)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원폭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폭탄 투하로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일본인은 물론 취업 이주나 강제 동원된 한인(韓人)<sup>1)</sup>, 타이완인, 중국인 등은 무차별적으로 살상되었다. 더욱이 피폭 후 한인 피해자는 방치되어 사상자가 많았으며, 2세, 3세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한인 피폭자 전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폭 2세와 3세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미·소 군정과 한국전쟁, 남북분단이라는 엄혹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인 피폭자 문제는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문제는 1960년대 한·일 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도 만들어지고,<sup>2)</sup> 1970년대 손진두가 일본정부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sup>3)</sup> 그리고 노태우 정권기 일본정부로부터 피폭자 구호금액으로 40억 엔(약 240억 규모)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적십자사, 한국사회보건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경상남도 등에서도 한국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인원도 1946

---

1) 한인은 한국과 북한, 일본, 해외 각지에 살고 있는 동포를 총칭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인을 사용하지만, 당시 용어나 고유명사로 사용했을 때는 조선인·한국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1967년 7월 10일 만들어졌으며,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73-1에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히로시마(1945. 8. 6.)와 나가사키(1945. 8. 9.)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격으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http://www.wonpok.or.kr/doc/intro2.html>).

3) 1972년 손진두 소송은 다음을 참조. 孫振斗さんにく治療と在留!>全國民の會編集委員會編, 『朝鮮人被爆者孫振斗告發』たいまつ社, 1978. 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朝鮮人被爆者孫振斗裁判の記録-被爆者補償の原点』, 被爆者問題市民會議, 1998.

년 일본 내무성이 발표한 10만 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sup>4)</sup> 한편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강제동원 관련 원폭피해자 조사는 주목되었지만, 동 위원회가 폐지되어 조사가 중단되었다.<sup>5)</sup>

피폭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가 어디서 피폭을 당했는가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기록물과 단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데 직접적인 피폭자 조사는 아니지만 연합군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이하 GHQ)<sup>6)</sup>의 지령에 따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서 조사한 일제 피징용자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7)</sup>

그동안 연구는 일본에서 1970년대 이래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의 이토 다케시[伊東壯]와 가마타 사다오[鎌田定夫] 교수가 변호사,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sup>8)</sup> 한국에서도 백충현과 정원섭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법적 문제를, 이명근은 진료 기록으로 임상적 논문을 썼으며, 김정경은 복지 대책을 연구하였다.<sup>9)</sup> 이치바 준코[市場淳子]는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한국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사회학, 법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0)</sup> 허광무는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

4) 내무성은 피폭 사망자와 생존자를 히로시마 318,130명(일 248,130명, 한 70,000명), 나가사키 230,000명(일 200,000명, 한 30,000명) 으로 추정 발표하였다(內務省 警報局, 『原爆被害者統計』, 1945.).

5)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6) 연합군최고사령부는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라고도 함. 사령부는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9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7년) 일본에 주둔하여 극동아시아를 지배한 기관이다.

7) 厚生省, 『朝鮮人勞務者調査結果報告』, 1946; 內務部, 『倭政時 被徵用者名簿』, 1952~1953. ; 內務部, 『日政期 被徵用者名簿』, 1957~1958.

8) 被爆者問題市民會議, 『在韓被爆者問題を考える』, 凱風社, 1988.

9) 정인섭, 「在日韓人の 法的地位 및 處遇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김정경, 「한국인원폭피해자의 복지대책」,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표문태 편, 『버림받은 사람들』, 증원문화, 1987, 박수복, 『핵의 아이들』, 한국기독교교정생활사, 198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그날 이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10) 자세한 연구동향은 다음을 참조. 이지영, 「한인원폭피해자문제 관련 연구와 자료현황」, 『일본공간』 12, 2012, 229~246쪽 ; 이은정, 「피폭된 신체와 고통, 한국인 원폭

실태와 과제를 제시하고, 전시 체제기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sup>11)</sup> 최근에는 원폭 관련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어 국가기록원과 합천원폭자료관 등 국내 소장 기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sup>12)</sup> 하지만 아직도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韓人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조사 배경과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강제동원과 원폭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맥락과 출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국가기록원, 합천원폭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일본 후생성과 한국 내무성이 조사한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동원된 인원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론적인 고찰은 원폭피해자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자료는 일본 후생성이 작성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朝鮮人勞動者に關する調査結果;長崎縣 제1권과 제2권)』, 일본 시민단체 「조선인강제연행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나가사키(장기) 피폭자명부』, 『히로시마(광도) 피폭자명부』, 한국 정부가 작성한 『일정시 피징용자명부』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등이다 (이상 국가기록원 소장). 또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합천원폭자료관, 일본 시민단체 소장 자료 등과 신문, 잡지, 개인 일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

피해자를 중심으로, 『민족연구』73호, 2019, 168~172쪽.

- 11)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 이지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1988. ;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 허광무,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한일민족문제연구』 20,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전시기 군수회사법에 의한 노무동원 기초연구』, 2008.
- 12) 이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공동주최 발표 자료집 원폭아카이브와 원폭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2022 참조 (수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심진태, 「한국인 원폭피해문제의 현황과 향후과제」; 최범순, 「합천원폭자료관의 정리 실태」; 김경남, 「원폭문제와 원폭아카이브 범주와 실태」, 2022).

## II. 피폭 후 한인 강제동원자·원폭피해자 조사 배경과 추이

먼저 한국인 원폭피해자 기록의 출처를 찾기 위하여, 피폭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피해자 조사의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폐허와 시체 더미 속에서 피해자 수습에 착수한 것은 일본 육군이었다. 육군은 수차례에 걸쳐 조사반과 救護班을 현지에 파견하여 부상자의 구호와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9월에 결과 보고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

육군은 구호 조사 결과 부상자 진료와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원폭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향후 반드시 다시 상세하게 조사·연구해야 한다. 원폭이 폭발할 때 방사능 물질과 함께 열선에 의한 폭풍이 발생하는데, 이때 방사능물질을 극히 다량으로 받으면 즉사한다. 폭격 직후 사망한 자 중에는 상당수가 방사능 물질을 많이 받아 죽은 자가 혼재되어 있다”.<sup>13)</sup>

이때 당시 원폭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히로시마 육군 양말지창 [広島陸軍糧秣支廠] 소속 육군들도 피해자를 수습하는데 참가하였다. 상처를 입은 대부분의 피폭자는 이 부근의 육군 관련 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로 볼 때, 피폭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육군의 피해자 수습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피폭자를 조사한 것은 일본의 후생성이었다. 후생성은 1946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 한인 노동자와 군인, 군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명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이 명부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소재하고 있는 인명으로 약 13,000여 명이 수록되어 있다.<sup>14)</sup>

13) 陸軍省, 『参考資料』, 1945.9.(陸軍一般史料中央軍事行政衛生原爆被爆者の治療の参考) (C13120709300, 防衛省防衛研究所)

14) 현재 국가기록원 명부에는 히로시마 인원이 2,500여 명에 불과하여 명부 입력이 불완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내무성은 원폭 피해 사망자와 생존자에 대한 통계를 냈다. 히로시마 총 318,130명(일인 248,130명, 한인 70,000명), 나가사키 230,000명(일인 200,000명, 한인 30,000명)으로,<sup>15)</sup> 한인 피해자는 히로시마 7만 명과 나가사키 3만 명, 약 10만 명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후생성의 앞의 조사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었다. 다시 추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한인 미불금을 둘러싸고, GHQ와 한국정부, 일본정부, 조선총연맹 사이에 정치적 해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부터 이승만정권하 한국정부는 GHQ에 한인 노동자 미불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sup>16)</sup> GHQ는 일본정부에게 조사를 지령하였으며, 기업들에게 한인 미불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sup>17)</sup> 한편 당시 조선총연맹은 귀환한 한인들을 대신하여 기업들에게 미불금을 받아 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HQ는 한인 미불금이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총연맹에게 돈을 주지말 것을 지령하였다.<sup>18)</sup>

결국 GHQ는 일본정부가 이 미불금을 공탁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sup>19)</sup> 이에 공탁금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당시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명부 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했던 노무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sup>20)</sup>

---

15) 内務省警報局, 『原爆被害者統計』, 1945.

16) GHQ SCPIN, *Clame from Korea*, 1949.

17) GHQ, 「日本の炭鉱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の預貯金及び賃金の朝鮮での支払いについて」, 1945.10.29.; GHQ ESS/AG230-14, 「労働者の賃金、退職手当処理」, 1945.11.28. 등. 일본정부는 1946년 1월부터 10월까지, 朝鮮人, 台湾人, 中国人 등의 미불금에 대해, 관계기관에 처리방법을 통달하였다. 자세한 것은 김경남,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 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2014 참조.

18) 内閣, 『朝鮮人及び外国人未払金の供託について』, 1952.

19) 한인 채무가 공탁금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경남, 앞의 논문(2014), 281~318쪽 참조.

20) 2010년 3월 일본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군인·군속·노무자 공탁금 명부 부분을 인도하였다. 등재 건수는 총 64, 279건 금액은 총 35,170,613.80엔이다(허광무, 「앞의 논문」, 2011, 16쪽). 이 명부는 동 기관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는 북한과 교전 중에 명부를 작성하였다. 내무부는 1952년부터 53년까지 『日政時被徵用者名簿』를 작성하였으나, 전쟁 중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57~58년 각 지방 읍·면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倭政時被徵用者名』를 추가 작성하였다. 이 두 조사와 1972년에 조사를 합산하면 모두 537,077명의 강제 징용자를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노동자는 약 13,000명 정도이며, 향후 피폭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노동자를 조사하였지만 피폭자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일본정부는 10년 간격으로 피폭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인 피해자는 해방 후 45년간 정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였다. 한국정부는 대체로 피해당사자와 유족이 신고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폭 당시 원폭피해자들은 엄청난 섬광과 뭉게구름 그리고 폭음,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 등의 처참한 광경과 극도의 공포 속에서 트라우마와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한인 피폭자들은 일본인들의 잔인성, 난민을 구호했던 일, 조국이 해방된다는 기대까지 복잡한 상황 하에서, 한국,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일본에 남는 등 존재 형태도 복잡하였다. 이에 따라 피폭자 조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일본과 달리, 오랫동안 한국에서 원폭피해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하고 침묵을 구조적으로 강요받아왔다. 원폭피해 1세대와 2세·3세대는 침묵과 무기력함과 마주해야 했다.<sup>21)</sup> 이에 따라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이하 피해자협회)에서도 등록을 권유하였지만, 피폭 사실 자체를 기피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결국 숨어버려 한인 피해자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sup>22)</sup> 다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1) 피폭자들의 건강과 생활상태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표문태 편, 앞의 책, 1987, 박수복, 앞의 책, 198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앞의 책, 1989.

22)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 없이 일부만 보상금을 받은 상황과 조사의 한계를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003년 5월 김분순씨가 한국여성교회협의회에 보낸 편지. 김분순씨는 1967년 협회 창립부터 활동한 피해자이다. ‘재외피폭자도 원폭 수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켈로이드로 고생하면서 죽어갔



에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들을 조사함으로써, 원폭 당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Ⅲ. 1960년대 이후 원폭피해자 조사의 특징

1960년대에 수행된 실태조사로서는 1964년 한국원자력병원 방사선의 학연구소가 전국 보건소와 도립병원을 통해 203명의 피폭자를 확인하였다. 1965년 재일본 대한민국의류민단 히로시마현 지방본부가 25명을 파견해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실태 조사를 요청하였다.<sup>23)</sup> 1974년 외무부가 피폭자진료병원 설립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으로 공지하여 파악된 인원은 4,976명이었다.<sup>24)</sup>

1965년 한일회담 이후, 피폭자들은 점차 공공기관이나 매스컴의 협력을 받으면서 문제를 가시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1967년 1월 27일에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후에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개칭, 이하 피해자협회)를 설립하여, 7월 10일에 정식 인가를 받았다. 설립 당시 등록된 피폭자는 1,600명 정도였다. 이때 외무부는 6만 명의 한인이 히로시마에서 피폭되었고, 그중 4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생존자 2만 명 가운데, 8천 명이 귀국했다고 보았다. 당시 나가사키의 경우는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피폭자 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sup>25)</sup> 조사의 한계를

---

던 피폭자는 수당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남겨진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나버린 일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누구라도 오래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죽어간 피폭자나 살아있는 피폭자라 할지라도 수당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23) 당시 한국에 사망자 8명을 포함해 462명의 피해자를 확인하였다 (이은정, 앞의 논문 (2019), 169쪽).

24) 박성실, 「한국원폭피해자의 사회적 고통, 그 구성과 대물림 : 원폭2세 환우 가족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5.

25) 外務部, 「面談記錄: 我が国の原爆被害者救護問題」, 1968.3.8, 『韓国人原爆被害者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조사 활동도 주목된다. 일본에 있던 시민들과 한인들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설립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를 돕고 있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 협의회[廣島縣朝鮮人被爆者協議會],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 한국교회여성연합회(韓國教會女性連合會), 한국 피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韓國の被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會]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한인 원폭피해자의 체험기나 증언, 르포,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관계 자료, 손진두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재판관계자료, 단행본 등이 나왔으며, 조사 자료도 12편이 작성되었다.<sup>26)</sup>

당시 자료 중 故 김광열씨가 작성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자료는 주로 강제동원 관련 자료이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피폭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자료이다. 이 자료군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기증된 상태이며 기록물에 대한 해제도 일부 나온 상태이다.<sup>27)</sup> 이 자료들은 생존자 중심의 자료가 많고, 사망하여 절에 모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 많으므로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동시에 1960년대 후반 이후 민간단체들이 한국인 피폭자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는 것에 주력하였다. 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안영천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약 600명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지부원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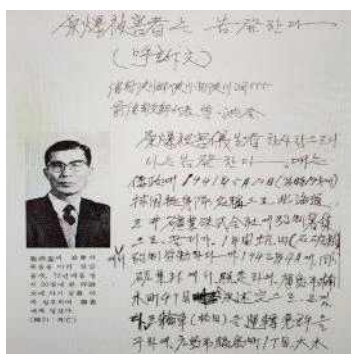
救護, 1968-1971』C-0044-19 11, 韓国外務部外交文書(외교사료관, 서울). ; 小林聰明, 「在韓被爆者救護をめぐる日韓交渉: 1960s~70s」, 日本國際問題研究所『歴史系検討会論文集』, 2022.

26)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전체 관계문헌 목록과 연표는 高木健一, 『在韓被爆者問題を考える-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 凱風社, 1988 참조. 1988년 현재 한인 원폭피해자의 체험기 및 증언 23편, 르포 54편, 조사자료 12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료 5명, 손진두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재판관계자료 25편, 단행본 61편이 있다.

27) 국가기록원, 『2021년 일제 강제동원 관련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2021.

등록하도록 하였다.<sup>28)</sup>

하지만 피폭자가 치료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개선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2년에 피해자인 손진두 씨가 통달 402호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몇 번의 소송을 거친 후 승소하여, 피폭을 당하고 28년이 지나 겨우 피폭자 수첩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29)</sup> 하지만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피폭자와 그 후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고발은 계속되었다.



〈그림 1〉 호소문 ‘원폭피해자는 고발한다’

원폭피해자는 고발한다.  
(호소문)

원폭피해 희생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고발한다. 때는 왜정 때 1941년 5월 10일(당시 19세때) 구국정신대 명칭으로 북해도 미쓰이[三井]광업주식회사에 강제모집으로 끌려가, 1년간 갱내(석탄굴) 강제 노동하다가 1942년 4월에 동 광업사에서 탈주하여, 히로시마시 楠木町 4정목 김영술 닥으로 옮겼다. 삼륜차[松田] 운전면허를 구하여 히로시마시 福島町 1정목 大木 …

출전: 서○○, 「호소문 원폭피해자는 고발한다」, 1972.

〈그림 1〉과 같이, 서씨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 72년 여름 갱지 20장에 고발장을 써놓았다. 고발장에는 자신이 강제동원에 모집으로 끌려간 경위와 탈주한 이야기, 히로시마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원폭 피해 희생자로서 당시 사실을 그대로 남겨놓았다.<sup>30)</sup> 이러한 자료들을 부산일

28) 이치바 준코(이제수 옮김), 『한국의 히로시마 20세기 백년의 분노,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역사비평사, 2003.

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삶과 피폭자운동의 경험-원폭피해자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2012년도 구술자료.

30) 박수복,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원폭피해자 30년의 기록』, 創元社, 1975.

보 기자였던 박수복씨가 수집하고, 피폭자의 인터뷰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핵의 아이들』이라는 사진집도 출간하였다.<sup>31)</sup>

한편 주목되는 조사는 경상남도가 직접 조사를 한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와 일본의 ‘핵금회의[核禁]’가 조사한 『1975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이다.<sup>32)</sup>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는 당시 합천지역 원폭피해자 총 793세대, 2,197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1972년 회원신상기록부』(총 3권)는 작성 당시 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 등록한 43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1972년 조사서에는 속죄의 의료단에서 진료를 받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피폭 당시 진술이 기록되어 있어 자신이 피폭자임을 증명하는 진술 자료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75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는 일본의 ‘핵금 회의’가 파견한 원폭 치료 전문의사단인 <속죄의 의료단>이 1975년 9월 23일~11월 20일 사이에 진료한 합천 지역 원폭피해자에 대한 조사이다. 강씨부터 한씨까지 총 92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편성한 자료인데,<sup>33)</sup>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양한 상처의 유형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는 원폭 투하 30년 후 피폭 1세들이 청·장년기에 작성한 심층조사로서, 합천지역 피해 1세들의 피해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귀국 후의 생활, 증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975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은 1968년 8월 1일, 일본의 ‘핵병기 금지, 평화건설 범국민회의’ 전국 집회에서 한국 피폭자의 호소가 반향을 일으켜, ‘핵금 히로시마 현민회의’를 중심으로 ‘한국 원폭피해자 구원 한일협의회’가 발족되었고, 한국 피폭자에 대한 치료와 실태조사를 추진하

31) 박수복, 『핵의 아이들』, 한국기독교교정생활사, 1986.

32) 경상남도,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 1972. ; 核禁會議, 『1975年原爆被害者實態調査』, 1975, 합천원폭자료관 소장.

33) 합천원폭자료관 소장 자료. ‘속죄의 의료단’은 1972년 8월에도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중앙일보』, 1972.8.15.).

기로 한 첫 시도였다.<sup>34)</sup> 조사는 9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협회를 돕기 위하여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원폭피해자를 찾아 그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1974년, 1977년, 1979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먼저, 1974년 가을, 경상도 합천지역과 서울지역에 대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식은 개별 가정을 찾아가 호구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sup>35)</sup> 그리고 1977년에는 4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그해 7월 말에 『한국원폭피해실태조사보고서』를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발행하였다.<sup>36)</sup> 1979년에는 2,200명의 조사 대상 중 피폭자 1세 1,070명, 2세 493명 총 1,56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사항, 피폭 당시의 형편, 피폭자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피폭 후 임신상황, 의식상태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sup>37)</sup>

이러한 시민단체의 조사 방식 외에도 1974년에는 외무부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것은 정부에서 피폭자진료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해자 신청 방식으로 진행하여 4,976명을 파악하였다.<sup>38)</sup>

80년대에 들어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sup>39)</sup>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에서 의료기록을 작성한 것이다. 이명근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인 피폭자 1,844명을 직접 진료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의료기록과 관련 연구는 스톡홀

---

34) 1975년 실태조사에는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피해지(그림으로 설명), 귀국까지의 경로, 피폭 전후의 건강 상황 등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피폭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35)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 『창작과 비평』, 1975년 봄호. 이우정,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75.

36)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원폭피해실태조사보고서』, 1977.7.

37)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원폭피해실태조사보고서』, 1983.

38) 박성실, 「앞의 논문」, 2015.

39) 김정경, 「한국인원폭피해자의 복지대책」,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피폭자에 대한 국내 자료는 표문태 편, 『버림받은 사람들』, 중원문화, 1987, 박수복, 앞의 책, 198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그날 이후』, 1989.

름에서 열린 국제의사협회에 소개하였다.<sup>40)</sup>

한편 1990년 한국정부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보건의료대책을 위한 지원금을 일본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1990년 실태조사는 그 지원금 사용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적십자의 담당 하에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은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다. 이 기관은 당시 1,982명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sup>41)</sup> 조사된 주요 내용은 인적 사항 및 생활실태, 제일거주사항, 피폭당시 상황, 피폭 후 건강 및 의료 이용, 조사지점에서 1년 동안 건강 및 의료 이용, 사회복지 수요 등이다. 하지만 이 조사 인원도 일본 내무성이 추산 발표한 한인 십만 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조사 현황이었다. 약 2%에 해당한다.

이후 노태우 정권은 일본정부로부터 원폭피해자를 위한 구호금액으로 40억 엔(약 240억 규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폭피해자에게 적십자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피폭자들은 적십자에 신청하고 등록하였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은 신청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원폭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피 현상은 피해자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다.<sup>42)</sup> 그리고 피해자 조사와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지부들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sup>43)</sup>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의 후생성과 내무성 등이 작성한 노무자, 군인, 군속 관련 기록물 사본이 대거 한국정부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 기록물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강제동원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원폭피해자기록 중의 하나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기록을 이관받은 당시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는 보존만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총독부기록물을 정리하면서 철 단위로 목록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일제강제동원자 명부’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단계

40)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1984.

41) 송건용 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4~15쪽.

42) 합천원폭자료관, 원폭피해자 진술 참조.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미기재.

43) 자세한 내용은 심진태, 「앞의 발표문」, 2022 참조.

이다. 하지만 강제동원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폭피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sup>44)</sup>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원폭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 실태 조사이다. 이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 1세 1,236명, 피해자 2세 1,226명 총 2,462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2013년도에 원폭피해자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다시 2018년도와 2020년도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원폭 발생 45년 이후인 1991년부터 몇 번에 걸쳐 피폭자를 조사하였지만, 대부분 2.5~5%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온전한 한인 원폭피해자 명부조차 변변하게 없는 실정이다.

한편 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서는 피폭 1세와 2세, 3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합천에는 이른바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곳으로 합천원폭자료관이 세워졌다. 이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sup>45)</sup>

이처럼 지금까지 일본 후생성과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한인 노무자 조사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인원은 2천명 선이거나 많아도 5천명 선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원폭피해자 2세·3세이다. 피폭자의 후손들은 원폭의 후유증으로 아픔을 감내하고 있

---

44) 공문서를 보충해 줄 자료는 원폭 피해자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피폭자 증언의 의미는 다음 책을 참조. 정근식, 『한국 현대사와 원자폭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05. 원폭 피해자 규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원폭 피해자 증언 기록을 한 곳으로 모아 데이터화할 필요성이 있다.

45) 합천원폭자료관과 소장 자료 등에 대해서는 2022년 학술심포지엄 심진태, 최범순, 김경남의 발표 참조.

으며, 무력한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 향후 원폭의 병증에 대한 계속 조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원폭피해자의 범주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 IV. 한인 원폭피해자의 기록물 맥락과 출처 분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인 원폭피해자 기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폭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사무분장을 조사하여 그 출처와 맥락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원폭문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곳에 살았던 한인들은 이전 시기부터 각자 이곳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원인 조사를 통해 기록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한인들이 많은 원인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취업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시 원폭에 의한 한인피해자 인원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원폭에 의한 한인피해자 인원 및 강제동원 노무자 내역

| 구분   | 총피폭자 | 한인피폭 | 사망 | 생존 | 한국귀환 | 일본잔류 | 강제동원 노무자 |
|------|------|------|----|----|------|------|----------|
| 히로시마 | 44만  | 5만   | 3만 | 2만 | 1만5천 | 5천   | 2,484    |
| 나가사키 | 30만  | 2만   | 1만 | 1만 | 8천   | 2천   | 14,771   |
| 합계   | 74만  | 7만   | 4만 | 3만 | 2만3천 | 7천   | 17,255   |

출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72.4 발표. 수치는 추정함. 강제동원 노무자 인원 17,255명은 2023년 1월 현재 국가기록원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검색한 인원으로 중복인원을 다소 포함하고 있음. 히로시마 관련 명부는 아직 입수하지 않았거나 미입력 상태로 추정됨.



<표 1>에서 보듯이 피해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대략적인 추산이기는 하지만, 한인 피폭자 7만 명 중 강제동원이 13,625명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한인 피폭자는 내무성 자료 10만 명보다 훨씬 적은 7만 명으로 잡고 있으며, 그 중 생존자가 3만 명인데,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23,000명(히로시마 15,000명, 나가사키 8,000명)이고, 일본에 남은 사람이 7,000명(히로시마 5,000명, 나가사키 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일본인의 수는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sup>46)</sup> 한인에 대한 총 피폭자수와 사망자수는 협회나 연구나 모두 같은 인원으로 추정만 하고 있지 비슷한 인원도 산출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현재 한인 총 피폭자수는 7만 명, 사망자수는 4만 명(히로시마 5만 명, 사망자수 3만 명, 나가사키 2만 명, 사망자수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sup>47)</sup> 그러므로 아직까지 한인에 대한 피폭자수와 사망자수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폭피해자를 추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 한인들이 원폭피해를 받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제동원이다. 이에 따라 1946년 당시 후생성이 GHQ의 명령 하에 미불금의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長崎)』명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노동자들은 당시 원폭피해를 당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강제동원을 받은 기업들은 군수공장과 탄광들이며,<sup>48)</sup> 해당 기업들은 폭심지로부터 피해 반경 속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설령 폭심지 주변이 아니더라도

---

46)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총피폭자 691,500명으로 추정하고, 히로시마 피폭 42만 명, 사망 159,283명, 나가사키 271,500명으로 추산함.(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 33쪽.)

47) 위의 통계는 허광무가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 33쪽에서 작성한 것이다.

48) 1943.10.31. .군수회사법에 의거하여 군수회사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 법은 12월 17일에 시행되었다. 당시 군수회사는 688개사가 지정되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전시기 군수회사법에 의한 노무동원 기초연구」, 2008, 35쪽.

라도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원폭피해자 기록물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폭을 만들고 투하한 미국 관련 기관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강제동원을 지시한 조선총독부와 일본의 후생성, 공탁금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성과 히로시마현청, 나가사키 현청, 받아들인 조선소나 통운회사, 탄광회사, 학교, 개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시점에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후생성에서 만든 강제동원 명부가 가장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기록물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동원한 명부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후생성이 1946년 실태 조사한 명부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이 명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로서, 당시 한인들에게 지불할 채무를 조사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각 기업들의 한인 고용 실태를 보고받은 내용이다.

이 명부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도 들어있어, 각각 장기 2/1, 2/2, 광도 2/1, 2/2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폭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강제동원된 노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49)</sup>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명부에 수록된 인원은 약 9,000명이라고 했지만,<sup>50)</sup> 2023년 2월 현재 동 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분석한 결과, 히로시마 2,484명, 나가사키 10,980명으로 총 13,464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1)</sup>

다음 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명부 중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강제동원된 노무자와 원폭피해자 관련 명부를 조사한 데이터이다.

---

49) 그런데 이 명부를 작성한 원 자료에 대한 명확한 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50) 국가기록원, 『2021년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료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2021.

51)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동원지로 되어 있는 인원을 모두 검색하여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였다. 이 명부에서 중복 인원을 파악한 결과, 18명 정도가 중복일 가능성이 있다. 중복 기준은 본적지, 생년월일, 동원지가 같은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력된 그대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https://theme.archives.go.kr/next/victimSearch01/viewMain.do>).

<표 2>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에 수록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강제동원 인원

|    |           | 명부명  | 히로시마<br>인원(명)   | 나가사키<br>인원(명) |
|----|-----------|--|-----------------|---------------|
|    | 구분        | 총계   | 2,484           | 14,771        |
| 1  | 피폭        | 히로시마(광도) 조선인 피폭자 명부  | 507             | 해당 없음         |
| 2  | 피폭        | 나가사키(장기) 조선인 피폭자 명부  | 해당 없음           | 2,252         |
| 3  | 군인·<br>군속 | 임시군인군속계(각도)  | 284             | 30            |
| 4  | 군속        | 군속선원명표(전26책, No.22/26)                                     | 6               | 2             |
| 5  | 군인        | 조선인 육군 군인 조사(6) 전남, 전북                                     | -               | 1             |
| 6  | 군인        | 조선인 육군 군인 조사(4) 충남, 충북, 강원도                                | 2               | 1             |
| 7  | 군인        |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1/10 구일본육군제적 경기도 강원도(3/10 경북, 경남, 4/10 전북, 전남) | 14              | 35            |
| 8  | 군인        | 병적전시명부 전북(2/3책, 3/3책) 충남 4/4책                              | 4               | -             |
| 9  | 노동자       | 도요[東洋]공업 반도응징사 신상조사표(광도)                                   | 173(실제<br>106명) | 해당 없음         |
| 10 | 노동자       | 전시 조선인 강제동원조사 자료집-연행지일람 전국지도 사망자명부                         | 2               | 8             |
| 11 | 노동자       |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장기편) 1/2, 2/2,                           | 해당 없음           | 10,985        |
| 12 | 노동자       | 노동원 사망자 명부(각도)   | -               | 5             |
| 13 | 노동자       | 병상일지 26/30책  | -               | 4             |
| 14 | 노동자       |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1)                                     | 2               | 373           |
| 15 | 노동자       | 왜정시 피징용자명부(각도)<br>일정시 피징용자명부(2)                            | 1,490           | 714           |
| 16 | 기타        | 화장 인허증 및 번제 보고서(장기)  | 해당 없음           | 361           |

출전: 국가기록원, 『2021년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료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2021; 『2022년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자료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2022.

<표 2>에 수록된 명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부는 후생성에서 작성한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장기편)』와 『조선인 육군군인 조사』, 『일정시 피징용사망자명부』,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병적전시명부』 등이다.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장기편)』에는 인명, 본적지, 출생연도, 동원지가 기재되어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명부 중에서 가장 많은 강제동원 인원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추정 인원 2만 명인데, 거의 절

반에 해당하는 10,985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명부 가운데 육군 군인·군속의 조사 명부와 병적 전시 명부 등을 포함하면, 14,771명이 나가사키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명이인을 제외하면 약 20여 건 정도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추정치 약 2만 명의 약 70%를 확인했으며, 향후 여러 명부의 교차 분석과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보완한다면 더욱 정확한 명부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한편 나가사키의 강제동원된 노동자와 군인, 군속들은 어느 지역 출신이 많은지 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 속에 나타난 나가사키 강제동원 인원 실태

| 도별  | 인원(명) | 도별 | 인원(명) | 도별  | 인원(명)  |
|-----|-------|----|-------|-----|--------|
| 강원도 | 702   | 충남 | 637   | 미기재 | 3,055  |
| 경기도 | 813   | 충북 | 1,440 | 미상  | 21     |
| 경남  | 2,072 | 평남 | 27    | 일본  | 8      |
| 경북  | 1,168 | 평북 | 18    | 조선  | 2      |
| 전남  | 1,384 | 함남 | 153   |     | 14,771 |
| 전북  | 1,836 | 함북 | 660   |     |        |
| 제주  | 27    | 황해 | 748   |     |        |

출전: 원본은 厚生省, 『朝鮮人勞働者調査結果報告』, 1946.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자명부, <https://theme.archives.go.kr/next/victimSearch01/viewMain.do> 2023.2월 현재 조사).

<표 3>과 같이, 미기재 인원이 3,055명으로 전체 14,771명의 약 20%에 해당하므로 수치는 한계를 가진다. 기재된 인원을 대상으로 도별 파악을 하면, 경남지역이 2,07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북 1,836명이다. 그리고 충북, 전남 순이다. 당시 제주는 전남에 속해 있으므로 전남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한인들이 나가사키에 강제동원된 조선, 광업, 통운 회사 중 기업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인원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나가사키 강제동원 기업과 한인 확인 인원

| 산업             | 기업명                | 지점 및 출장소         | 인원(명)     |
|----------------|--------------------|------------------|-----------|
| 총계             |                    |                  | 5,552     |
| 조선<br>(1,799명) | 미쓰비시[三菱]조선(주)      | 나가사키조선소          | 1,298     |
|                | 천남[川南]조선(주)        | 후카호리[深堀]조선소      | 501       |
| 광업<br>(3,350명) | 길원광업소              | 대지좌탄광            | 447       |
|                | 덕의탄광               |                  | 276       |
|                | 동방아연주식회사           | 대도광업소            | 93        |
|                | 북송포군 금복정<br>소영치지군장 |                  | 125       |
|                | 쇼와[昭和]탄업(주)        | 토비지 탄광<br>평전산 탄광 | 56<br>506 |
|                | 야상동아공업(주)          | 신립탄광             | 677       |
|                | 일실광업(주)            | 강영탄업소            | 678       |
|                | 나가사키광업             | 이왕도광업소           | 492       |
| 통운<br>(403명)   | 일본통운주식회사           | 강두조대촌 출장소        | 4         |
|                |                    | 대촌지점, 청수조<br>작업소 | 94<br>98  |
|                |                    | 장기지점             | 92        |
|                | 장기항운주식회사           |                  | 115       |

출전: 원본은 厚生省, 『朝鮮人勞働者調査結果報告』, 1946.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자명부, <https://theme.archives.go.kr/next/victimSearch01/viewMain.do> 2023.2월 현재 조사).

<표 4>와 같이, 나가사키에 있는 기업 중에 조선, 광업, 통운회사에 5,552명의 한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인명과 본적지, 동원지 등으로 확인하였다. 조선회사에는 1,799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업부문에는 3,350명, 통운 부문에는 403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당시 나가사키에 살고 있었으며, 피폭으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분야별로는 광업 분야에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기업별로는 미쓰비시조선주식회사 나가사키 지점에 가장 많은 1,298명의 인명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나가사키에는 나가사키제강소, 다카시마(高島)탄광, 하시마(端島)탄광 등 미쓰비시 병기 오하

시(大橋)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일본의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히로시마 한인 피폭자가 나가사키보다 4만 명 정도가 많기 때문에, 아직 입력하지 않은 명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명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전체 피폭자 인원의 1/2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조사·작성한 명부 (3종, 537,077명)가 있다. 1952~53년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日政時被徵用者名簿』와 1957~58년 각 지방 읍·면을 통해 신고받은 『倭政時被徵用者名簿』, 그리고 1970년대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업무에 참고한 『被徵用死亡者連名簿』 등이다. 당시 피징용자명부에 나타난 히로시마의 강제동원 도별 및 군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5> 일제강점기 피징용자명부에 나타난 히로시마 강제동원 도별 및 군별 인원

| 도별  | 인원  | 군별 동원 인원   |
|-----|-----|--|
| 강원도 | 201 | 강릉11 고성1 명주24 양구3 양양8 영월5 원주6 인제1 정선28 춘성26 춘천2 통천1 평창57 홍천26                            |
| 경기도 | 967 | 강화98 경성32 광주3 김포16 부천29 수원2 안성112 양주1 양평12 여주132 연천8 용인21 이천136 장단5 평택59 포천91 화성202 미기재7 |
| 경남  | 31  | 남해1 부산1 울산7 의령1 진양4 창녕6 합천11   |
| 경북  | 6   | 상주2 영일4  |
| 전남  | 72  | 광산4 광주7 무안10 승주17 여수1 영암26 장흥1 진도6   |
| 제주  | 35  | 제주군2 남제주8 북제주25  |
| 전북  | 126 | 고창3 김제23 남원6 부안6 순창19 옥구19 익산31 임실18 진주1   |
| 충남  | 7   | 공주1 논산3 서산1 아산1 미기재1(경기도에 수록됨)   |
| 충북  | 12  | 보은3 음성1 제천1 진천1 청원5 충주1  |
| 평남  | 6   | 강동1, 중화1(김창덕 허동주는 강원도에 기재)<br>진남포부1(이순일 서울에 기재), 미기재3(평남 본적)                             |
| 평북  | 3   | 강계1(이광철 강원도 기재), 미기재2(김만진, 최동식 경기도)  |
| 함남  | 13  | 북청1 신흥1 안변1 함흥1 홍원5 홍천4  |

일제의 강제동원과 원폭피해자 기록의 출처 연구(김경남)

|     |       |  |
|-----|-------|--|
| 함북  | 1     | 성진1  |
| 황해도 | 9     | 황해도9 (박광원 박삼성 이돈재 이창훈 조남옥 진엽, 안태운은 경기도 기재, 연백군출신 채원군 서울특별시 기재, 유종룡 강원도 기재) |
| 미기재 | 1     | 미기재1 (평산윤용)  |
| 총계  | 1,490 |  |

출전: 내무부, 『日政時被徵用者名簿』, 1952~53년. ; 『倭政時被徵用者名簿』, 1957~58년. ; 『피징용사망자연명부(被徵用死亡者連名簿)』, 1970.

<표 5>와 같이, 이 명부들에는 히로시마 1,490명, 나가사키 피징용자가 714명 총 2,204명으로, 두 지역 합쳐서 국가기록원 제공 명부의 총 인원 537,077명 중 0.4%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된 것은 명부조사가 신청제였다는 한계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 경남지역이 31명, 경북이 6명, 전남이 72명, 충남, 충북도 각각 7명, 11명이며, 북한지역은 거의 한자리 수에 해당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 보고 명부와 크로스 체크를 통해 분석을 해야 한다.

또한 주목되는 조사는 1992년부터 일본의 시민단체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나가사키(장기) 원폭피해자명부』(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TA0002068)와 『히로시마(광도) 원폭피해자명부』(CTA0002066)이다. 이 명부는 1982년 오카 마사하루 교수가 작성한 것인데 인명만 표시되어 있어 정보 활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원폭피해자 명부로서 조사했다는 점에 의미를 가지며, 앞의 『조선인노동자조사결과』 명부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가사키(장기) 조선인 피폭자 명부』에는 총 2,252명이 수록되어 있다.<sup>52)</sup> 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25명, 경기도 20명, 경남 162명, 경북 124명, 전남 78명, 전북 23명, 충남 18명, 충북 23명, 평남 6명, 평북 2명, 함남 66명, 함북 308명, 황해 90명, 미상

52)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동원 관련조사 연구보고1』, 2021에는 2,251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2,252명이 수록됨.

1,307명이다.

한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강제동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곳 주변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이주한 경우도 많았다.<sup>53)</sup>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한인들은 히로시마 근교의 공업지대에 노동자로 일하였다. 주로 미쓰비시 조선소나 동양공업, 히로시마전기, 일본제강, 구레(吳)의 조선소, 군관계 등이었다. 일반 취업자들은 주로 이러한 작업장 주변에 함바집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함바집은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히로시마는 대륙으로 떠나는 국제적 중심 항구였기 때문에 항만의 노동자나 현청에서 실시하는 철도공사, 하천공사, 도로공사, 방공호공사, 항만공사, 터널공사 등의 토목공으로도 일하였다. 한편 식량을 생산하는 농림 노동자로서 취업하기도 하였다.

여성들도 함께 함바집에서 장사를 하거나 공장, 고물장사 등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함천 출신 구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친 뿐 아니라 숙모, 올케, 언니 등도 일을 했다. 주로 통조림과 같은 식료품공장, 면화공장, 양말공장 등이었다. 또한 남편과 함께 고물, 고철을 주어다가 팔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숙이나 여인숙의 경우에는 주로 혼자 히로시마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았던 남자들을 대상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독신으로 모친 혼자 장사를 한 경우에는 엿이나 어묵과 같은 먹거리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sup>54)</sup>

이처럼 강제동원된 인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동원자에 대하여 먼저 확인을 하고, 각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가족들까지 조사해야 원폭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관리에서

---

53) 한인의 일본 이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광열,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1910-1940년대』, 논형, 2010.

5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37쪽.; 문경희,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함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Homo Migrans』 19, 이주사학회, 2018, 24쪽.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인명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새롭게 밝혀진 인명을 추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고유번호 부여 방식은 두 단계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가나다순으로 임시정리번호를 부여한다. 둘째는 국내와 국외, 기록물의 소장처(중앙, 지방자치체, 시민단체, 개인)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다. 셋째, 컬렉션별, 인명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피해자 인명별로 고유번호를 만들어 관리하고, 다시 추가되는 사람은 총 고유번호에 인명을 가나다순으로 재배치하여 관리하면 된다. 그 인명에는 국제적인 표준에 기반한 기술 규칙을 만들어,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를 기입하고 면밀한 분석과 보완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원폭 기록물은 피해자들이 한국은 물론 일본, 북한, 기타 외국에 분산하여 살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한 곳에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뉴스크립트적 컬렉션화가 필요하다.<sup>55)</sup> 이를 통해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 2세, 3세 기록물의 관리와 강제동원 피해자가 원폭피해자가 된 경우를 선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는 국가기록원, 합천원폭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기관이 원폭피해자 기록물들을 각각 보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도 정부가 제공하지 않은 기록물을 발굴하고, 시민단체들이 활동한 기록들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폭수습 정책과 관련이 있는 GHQ의 원 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5) 기록학적 관점에서 기술규칙은 ISAD(G) SECOND 버전에서 제시하는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영역,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시스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조코드 즉 고유번호이다. 고유번호는 전거 제어 코드로서, 이 참조코드를 활용하여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폭아카이브는 ISSAR에서 제시하는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역사적 배경 항목을 넣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생산맥락과 출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945년 8월 피폭 이후 일본정부, 한국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한 한인 원폭피해자 조사의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고, 강제동원과 원폭피해자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인에 대한 강제동원과 원폭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맥락과 출처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일본 후생성과 시민단체가 작성한 명부와 한국 정부와 연구소가 작성한 명부, 합천원폭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명부의 출처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동원된 인원을 추출하였고, 향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폭문제의 하나로서, 피폭 2세, 3세가 피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피폭 8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한인 원폭 피해자 명부조차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폭아카이브의 카테고리는 광의로 했을 경우, 원폭문제와 관련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등 세계의 국가가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일본과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를 중심으로 원폭 기록물의 출처를 분석하고 실태 조사의 배경과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피폭 이후 원폭 관련 조사는 일제하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연관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1946년 일본 후생성과 한국 정부가 조사한 명부가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한국정부의 각 기관과 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은 대부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청자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실시한 조사는 피폭 직후 일본 내무부가 제시한 10만 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일본 내무부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추정한 인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출처별 실태조사의 내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의 경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4,771명의 인원을 파악하였고, 히로시마의 경우는 2,252명을 추출하였다.(일부 중복 포함), 히로시마가 피해 인원이 많은데 그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원폭피해자를 추적하는 방법은 일단 피폭 이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조사한 일본의 후생성 『조선인노동자실태조사결과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시 한국정부가 조사한 『일정시 피징용자명부』와 1957년~58년도에 작성한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보완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만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명부에 기반하여 한인 원폭피해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로 교차 분석이 필요하며, 후생성 조사 이외에는 한국으로 돌아온 생존자 중심의 조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인 피해자 문제는 해방 이후 8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피폭자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2세와 3세들이 환우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전체암, 폐암,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등을 앓고 있다. 한인 피폭자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북한, 일본, 기타 외국 등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문제이므로 한-일 간의 과거사 해결 방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피폭자 2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문제 등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기초적인 전면 조사와 비교검토를 통한 원폭 피해자 명부의 리스트 작성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각종 기관에서 조사해 온 기록물들을 인위적으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화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피폭 1세와 피폭 2세, 3세에 대한 기록물들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위적 통합적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화한 기록물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원폭피해자 명부는 피해자 1명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련기록물들을 전거 제어해 나가야 할 것이다. ISAD(G)에 기반한 기술 규칙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각급 기관에 산재한 기록물들을 상호 보완하고 중복되는 것을 체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지극히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록물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강 관련 개인 기록은 100년 이상 비공개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개 평가 작업을 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피폭자 조사가 필요하고, 피폭 2세, 3세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 병행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원폭아카이브를 관리 보존하는 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원폭아카이브 구축의 역사적 의미는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과 원폭피해자 문제의 중첩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직접 피폭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2세, 3세에 걸쳐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차원에서도 세계 인류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임상 경험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참혹한 식민지 지배하에 강제동원을 당하고 더하여 피폭자가 된 한인의 참담한 역사를 일본과 세계에 발신함으로써, 인류사에서 원자폭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1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차 사료>

- 陸軍省, 『参考資料』, 1945.9. (陸軍一般史料中央軍事行政衛生原爆被爆者の治療の参考)
- 内務省警報局, 『原爆被害者統計』, 1945.
- GHQ, *Clame from Korea*, 1949.
- GHQ, 「日本の炭鉱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の預貯金及び賃金の朝鮮での支払いについて」, 1945.
- GHQ ESS/AG230-14, 「労働者の賃金, 退職手当処理」, 1945.
- 内閣, 『朝鮮人及び外国人未払金の供託について』, 1952.
- 内務部, 『倭政時 被徴用者名簿』, 1952~1953.
- 内務部, 『日政期 被徴用者名簿』, 1957~1958.
- 孫振斗さんに<治療と在留!>全國民の會編集委員會編, 『朝鮮人被爆者孫振斗告發』, たいまつ社, 1978.
- 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朝鮮人被爆者孫振斗裁判の記録-被爆者補償の原点』, 被爆者問題市民會議, 1998.
- 『中央日報』

<학위논문 및 일반논문>

- 김경남,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지배 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기록학연구, 2014.
- 김경경,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복지대책」,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문경희,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Homo Migrans』 19, 이주사학회, 2018.
- 박성실, 「한국원폭피해자의 사회적 고통, 그 구성과 대물림 : 원폭2세 환우 가족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백충현·정인섭, 「제한원폭피해자의 현황과 법적 구제 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126, 1987.2.

- 이은정, 「피폭된 신체와 고통,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중심으로」, 『민족연구』73,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9.
- 이지영,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 관련 연구와 자료현황」, 『일본공간』 1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 정인섭, 「在日韓人の 法的地位 및 處遇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 허광무,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한일민족문제연구』 20,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 <단행본>

- 김경남,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0.
- 김광열,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1910-1940년대』. 논형, 2010.
- 나가사키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 편, 『조선인피폭자-나가사키로부터의 증언』, 사회평론사, 1989.
- 류제원·조용혁·Chi Sang-Hyun, *Geopolitics from Below: “Korean Hiroshima, Hapcheon” and the Nuclear Victims*, Political Science, 2020.
- 박수복, 『해의 아이들』,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1986.
- 박수복,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원폭피해자 30년의 기록』, 創元社. 1975.
- 송건용 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1991.
-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1988.
- 이치바 준코, 『삼중고를 겪어 온 한국인 원폭피해자들』, 1999.
- 이치바 준코(이제수 옮김), 『한국의 히로시마 20세기 백년의 분노,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역사비평사, 2003.
- 이실근, 『재일본조선인 피폭자연락협의회』, 1988.
-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편, 『한국인·조선인 원폭피해 관련 자료집』, 2001.
- 정근식, 『한국 현대사와 원자폭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05.
- 廣島市·長崎市原爆災害編纂委員會, 『廣島·長崎の原爆被害』, 岩波書店, 1979.

- 표문태 편, 『버림받은 사람들』, 증원문화, 1987.
- 被爆者問題市民會議, 『在韓被爆者問題を考ふる』, 凱風社, 1988.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그날 이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2005.
- 高木健一, 『재한피폭자문제를 생각한다 -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凱風社, 1988.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 <보고서·발표문·기타>

- 국가기록원, 『2021년 일제 강제동원 관련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202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삶과 피폭자운동의 경험-원폭피해자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2012.
- 경상남도,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 1972.
- 김경남, 「원폭문제와 원폭아카이브 범주와 실태」,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자료집 원폭아카이브와 원폭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2022.
- 심진태, 「한국인 원폭피해문제의 현황과 향후과제」,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자료집 원폭아카이브와 원폭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2022.
- 이우정, 『한국원폭피해자 실태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75.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전시기 군수회사법에 의한 노무동원 기초연구』, 2008.
- 최범순, 「합천원폭자료관의 정리 실태」,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자료집 원폭아카이브와 원폭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 경북대학교·한일민족문제학회, 2022.
- 核禁會議, 『1975年原爆被害者實態調査』, 1975.
-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 『창작과 비평』, 1975년 봄호.
-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원폭피해실태조사보고서』, 1977.7.
-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원폭피해실태조사보고서』, 1983.
- <https://theme.archives.go.kr/next/victimSearch01/viewMain.do>
- <http://www.wonpok.or.kr/doc/intro2.html>

## A Study on the Sources of Documents about Atomic Bomb Victims and Compulsory Mobilization under Japanese Rule

Kim, Kyung-nam

This study examines the investigation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by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after the bombing in August 1945.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mobilization and atomic bomb victims, and analyzes the context and sources of atomic bomb victim documents.

The study analyzes rosters prepar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ivic groups, rosters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and records held by the Hapcheon Atomic Bomb Museum and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The study found that most of the workers who were compulsory mobilized in Hiroshima and Nagasaki were victims of the atomic bombing. Since the 1960s, surveys in Korea have been limited to living people, which represents less than 5,000 people, or 5% of the 100,000 announced by Japan's Ministry of Interior.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nduct an overall investigation by assigning a unique number to the lives of the victims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their descendants to create an accurate list.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impact of atomic bomb



exposure on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who suffer from various diseases and difficulties, and should be included in the damage category. Despite the passing of almost 80 years, there is still no list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The study proposes a full-scale investigation of the atomic bomb victims to serve as a basis for resolving this issue in the future.

**keywords :**

Forced mobilization, Koreans, atomic bomb victims, Hiroshima, Nagasaki

